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
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
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



성 북 구
(기획예산과)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8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0.
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「민법」 및 「행정기본법」의 일부개정(시행 2023. 6. 28.)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,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민법 및 행정기본법」(만 나이 통일법) 일부개정에 따라 나이 규정에서 “만” 표시를 삭제하여 정비(안 제1조~안 제9조)
- 나. 기타 띄어쓰기 및 항 번호 매김 수정(안 제3조, 제4조,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민법」, 「행정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9개 조례 소관 4개 부서와 협의 되었음
 - 협의부서 : 감사담당관,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, 아동청소년과, 청소행정과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23. 6. 22. ~ 7. 12.(20일)
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신·구조문대비표 : [붙임1]

3)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[붙임2]

4) 부패/인권/성별/아동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제외대상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
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 24세”를 “24세”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·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·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만 13세”를 “13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만 16세”를 “16세”로 한다.

별지서식 앞쪽 중 “만14세”를 “14세”로 하고, 같은 앞쪽 중 “아동·청소년동행카드의 (재)발급”을 “아동·청소년동행카드의 (재)발급”으로 하며, 같은 앞쪽 중 “만13세, 만16세”를 “13세, 16세”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제5호 중 “거주함을 확인”을 “거주함을 확인”으로 하며, 같은 뒤쪽 제1호 중 “만 14세”를 “14세”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만 18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·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·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11세에서 만12세”를 “11세에서 12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만13세부터 만18세”를 “13세부터 18세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6세에서 만12세”를 “6세에서 12세”로 한다.

제8조(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표 대상란 중 “만 18세”를 각각 “18세”로 하고, “만 19세”를 각각 “19세”로 한다.

제9조(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만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1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1.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청소년”이란 <u>만 24세</u>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	1. ----- <u>24세</u> ----- -----.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
2.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
1. “노인”이란 <u>만 65세</u>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	1. ----- <u>65세</u> ----- -----.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
3.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

현행	개정안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노인”이라 함은 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 2. (생략)	제3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 65세 ----- -. 2. (현행과 같음)
제23조(행정 및 실무지원) ① (생략)	제23조(행정 및 실무지원) (현행 제1항과 같음)

4.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·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

현행	개정안
제3조(발급대상자) ① 발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“발급대상자”라 한다)으로 한다.	제3조(발급대상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해당 연도에 만 13세가 되는
청소년

2. (생 략)

3. 해당 연도에 만 16세가 되는
청소년

4. 5. (생 략)

② (생 략)

[별지서식]

(암쪽)

아동·청소년동행카드 [재]발급신청서

* 귀쪽의 신청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발급대상자 (대상아동·청소년) 성명: _____ 생년월일: _____ 성별: 남 [] 여 [] 주소: _____ 전화번호: _____ 휴대번호: _____ 학교명: _____ 학년/반: _____			
신청내용	신청구분	[] 신규 [] 재발급([] 분실 [] 훼손 [] 그 외)	
신청(동의)인 (법정대리인) 성명: _____ 관계: _____ 생년월일: _____ 주소: _____ 전화번호: _____ 휴대번호: _____ 신청인 구분: [] 법정대리인 [] 대상아동·청소년 * 만14세 미만의 대상아동·청소년이 신청할 경우,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법정대리인 (서명 또는 인) _____			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·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·청소년동행카드의 (재)발급을 신청합니다.	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_____			
성북구청장 귀하			
위 학생은 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. 확인자 _____ 학교장 직인			
비고	* 해당 연도에 만13세, 만16세가 되는 청소년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. * 재학증명서 첨부 시,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.		

1. ----- 13세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16세 -----

4.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[별지서식]

(암쪽)

아동·청소년동행카드 [재]발급신청서

* 귀쪽의 신청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발급대상자 (대상아동·청소년) 성명: _____ 생년월일: _____ 성별: 남 [] 여 [] 주소: _____ 전화번호: _____ 휴대번호: _____ 학교명: _____ 학년/반: _____			
신청내용	신청구분	[] 신규 [] 재발급([] 분실 [] 훼손 [] 그 외)	
신청(동의)인 (법정대리인) 성명: _____ 관계: _____ 생년월일: _____ 주소: _____ 전화번호: _____ 휴대번호: _____ 신청인 구분: [] 법정대리인 [] 대상아동·청소년 * 14세 미만의 대상아동·청소년이 신청할 경우,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법정대리인 (서명 또는 인) _____			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·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·청소년동행카드의 (재)발급을 신청합니다.	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_____			
성북구청장 귀하			
위 학생은 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. 확인자 _____ 학교장 직인			
비고	* 해당 연도에 13세, 16세가 되는 청소년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. * 재학증명서 첨부 시,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.		

(부록)	
신청인 제출서류	1. 가족증명서(필요시) 2. 아동·청소년등록카드(아동·청소년등록카드가 취소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.) 3.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·청소년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4.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기혼증명서 등) 5.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·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자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할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※ 이 경우 사실 대표자를 본 조제 제8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.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대상확실의 주민등록표 등·초본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
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1호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(개인정보의 제공)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. 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목적 : 아동·청소년등록카드 발급 및 관리 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발급대상자의 성명, 성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자학 학교명, 학년·반 3.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여부 및 구에 체류지를 본 사항 확인 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사업종료일부터 5년(회계서류 보존) 5.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: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거부할 경우 아동·청소년등록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	
신청인	() 동의함 () 동의하지 않음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
본인은 이 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발달장애인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
※ 「전자정부법」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(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) (☐ 주민등록 ☐ 여권 ☐ 외국인등록 ☐ 운전면허) 번호 :	
신청인	() 동의함 () 동의하지 않음
유의사항	
1. 아동·청소년등록카드의 발급은 아동·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. 다만, 14세 미만과 대상 아동·청소년이 직접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. 아동·청소년등록카드는 지정된 사용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발급연도 12월 15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,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을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. 3. 아동·청소년등록카드는 타인에게 양도,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또한 해당카드 분실 및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4. 발급대상자 또는 신청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.	

(부록)	
신청인 제출서류	1. 가족증명서(필요시) 2. 아동·청소년등록카드(아동·청소년등록카드가 취소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.) 3.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·청소년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4.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기혼증명서 등) 5.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·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자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할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※ 이 경우 사실 대표자를 본 조제 제8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.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대상확실의 주민등록표 등·초본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
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1호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(개인정보의 제공)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. 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목적 : 아동·청소년등록카드 발급 및 관리 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발급대상자의 성명, 성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자학 학교명, 학년·반 3.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여부 및 구에 체류지를 본 사항 확인 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사업종료일부터 5년(회계서류 보존) 5.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: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거부할 경우 아동·청소년등록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	
신청인	() 동의함 () 동의하지 않음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
본인은 이 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발달장애인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
※ 「전자정부법」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(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) (☐ 주민등록 ☐ 여권 ☐ 외국인등록 ☐ 운전면허) 번호 :	
신청인	() 동의함 () 동의하지 않음
유의사항	
1. 아동·청소년등록카드의 발급은 아동·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. 다만, 14세 미만의 대상 아동·청소년이 직접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. 아동·청소년등록카드는 지정된 사용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발급연도 12월 15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,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을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. 3. 아동·청소년등록카드는 타인에게 양도,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또한 해당카드 분실 및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4. 발급대상자 또는 신청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.	

5.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

현행	개정안
제2조(급식지원의 대상)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. 다만, 18세 이상인 경우에도	제2조(급식지원의 대상) ----- ----- ----- 18세 ----- ----- -----.
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한다.	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
6.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·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.
1. “어린이의회”란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“구”라 한다)에 거 주하고 있는 만11세에서 만12 세까지의 어린이거나, 초등학 교 5~6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 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에서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<u>11세에서 12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2. “청소년의회”란 구에 거주하 는 만13세부터 만18세까지의 청소년이거나, 중학교 1학년에 서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하는	2. ----- -- <u>13세부터 18세</u> ----- ----- -----

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. 3. (생략) 제13조(의견반영) ①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. 3. (현행과 같음) 제13조(의견반영) (현행 제1항과 같음)
---	--

7.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돌봄 아동“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<u>만6세에서 만12세</u>에 해당하는 아동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. 2. 3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<u>6세에서 12세</u>----- -----. 2. 3. (현행과 같음)

8.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현행				개정안			
[별표 2]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상한 (제8조 관련)				[별표 2]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상한 (제8조 관련)			
구분		대 상	사 용 료(원)	구분		대 상	사 용 료(원)
시청각실	고교생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	5,000	1시간	시청각실	고교생 이하 또는 18세 이하	5,000	1시간
	대학생 이상 또는 만 19세 이상	10,000			대학생 이상 또는 19세 이상	10,000	
다목적연습실	고교생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	5,000	1시간	다목적연습실	고교생 이하 또는 18세 이하	5,000	1시간
	대학생 이상 또는 만 19세 이상	10,000			대학생 이상 또는 19세 이상	10,000	
동아리실	고교생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	2,000	1시간	동아리실	고교생 이하 또는 18세 이하	2,000	1시간
	대학생 이상 또는 만 19세 이상	4,000			대학생 이상 또는 19세 이상	4,000	
강의실	고교생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	2,000	1시간	강의실	고교생 이하 또는 18세 이하	2,000	1시간
	대학생 이상 또는 만 19세 이상	4,000			대학생 이상 또는 19세 이상	4,000	
음악연습실	고교생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	2,000	1시간	음악연습실	고교생 이하 또는 18세 이하	2,000	1시간
	대학생 이상 또는 만 19세 이상	4,000			대학생 이상 또는 19세 이상	4,000	
비고	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및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산시설(구민회관, 구민체육관, 복지관 등) 2개소 이상의 사용료 및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.			비고	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및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산시설(구민회관, 구민체육관, 복지관 등) 2개소 이상의 사용료 및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.		

9.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제5조(지원대상 선정) ① (생략)	제5조(지원대상 선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만65세 이상 또는 장애인, 저소득자	1. 65세 ----- -----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
[붙임2]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
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상위법(민법 및 행정기본법) 개정에 따른 나이 관련 조문 개정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,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 성 자

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김 중 호